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학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연구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(안 제15조),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며(안 제19조의2 [별표1]),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선정제외 기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0조 [별표1의2]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4. 6. ~ 5.17.) 예정

3) 규제심사 추후 예정

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를 제15조의2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연구부정행위의 종류)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’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부당한 이득을 얻는 중복게재 행위
2.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
3. 그 외 교육부장관이 훈령으로 정하는 행위

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환수 사유	환수 기준
7.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	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)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별표 1의2와 같다.

제20조의2제1항 중 “별표 1의2와”를 “별표 1의3과”로 한다.

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,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) 영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) 영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

1. 일반기준

가. 가중기준

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[제2호 5)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]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.

- 1)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2)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.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.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감경기준

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[제2호 5)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]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합산기준

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·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.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참여제한 기간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1호 법 제20조	5년
2)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2호 법 제20조	3년
3)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3호 법 제20조	7년
4)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		
가) 사업비를 횡령,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	법 제19조제2항제1호 법 제20조	5년
나)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	법 제19조제2항제1호 법 제20조	3년
다)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	법 제19조제2항제1호 법 제20조	2년
5)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	법 제19조제2항제2호 법 제20조	1년
6)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9조제2항제3호 법 제20조	3년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5조(연구부정행위의 종류) 법</u> <u>제15조제1항제2호에서 ‘대통령</u> <u>령으로 정하는 행위’는 다음 각</u> <u>호와 같다.</u> <u>1.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</u> <u>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</u> <u>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</u> <u>한 후 부당한 이득을 얻는 중</u> <u>복게재 행위</u> <u>2.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</u> <u>방해 행위</u> <u>3. 그 외 교육부장관이 훈령으</u> <u>로 정하는 행위</u>
<u>제15조 (생 략)</u> <u>제20조(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</u> <u>외 기간) 법 제20조제1항에 따</u> <u>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</u> <u>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</u> <u>분에 따른다.</u> <u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</u> <u>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: 5년</u> <u>2.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</u> <u>기한 경우: 3년</u> <u>3.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</u>	<u>제15조의2 (현행 제15조와 같음)</u> <u>제20조(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</u> <u>외 기간) 법 제20조제1항에 따</u> <u>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</u> <u>정 제외기간은 별표 1의2와 같</u> <u>다.</u>

경우

가. 사업비를 횡령, 편취(騙取) 또는 유용(流用)한 경

우: 3년 이상 5년 이하

나.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
정 집행한 경우: 2년 이상

3년 이하

다.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
시 전용(轉用)하여 사용한

경우: 2년 이하

4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
을 위반한 경우: 1년

5.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
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: 2년
이상 5년 이하

제20조의2(제재부가금의 부과
기준 등)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
따른 제재부가금(이하 “제재부
가금”이라 한다)의 부과기준은
별표 1의2와 같다.

②·③ (생략)

대통령령 제30106호 학술진흥법
시행령 [별표1]

환수 사유	환수 기준
< 신 설 >	< 신 설 >

제20조의2(제재부가금의 부과
기준 등) ① -----

별표 1의3과 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대통령령 제30106호 학술진흥법
시행령 [별표1]

환수 사유	환수 기준
<u>7. 연구부정행</u> <u>위를 한 경우</u>	<u>해당 연도의 출</u> <u>연금 전액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학술진흥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852